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5급 3명)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관리단과 재정성과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정원 2명(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법·제도의 정비
2.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부처별·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마련
3.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부처별·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

5. 국고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
· 관리 및 활용 촉진

6.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2.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 총괄

3.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4. 각 중앙행정기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성 점검

제9조제6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6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6항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36”을 “460”으로 하고, 별정직 계 “3”을 “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다음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431”을 “45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6”을 “17”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을 “16”으로, 서기관 “30”을 “29”로, 행정사무관 “133”을 “142”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6”을 “49”로, 행정주사 “56”을 “61”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8”을 “30”으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비서(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36"을 "460"으로 하고, 별정직 계 "3"을 "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다음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431"을 "45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6"을 "17"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을 "16"으로, 서기관 "30"을 "29"로, 행정사무관 "139"를 "148"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6"을 "49"로, 행정주사 "48"을 "53"으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8"을 "30"으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비서(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미래전략기획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미래전략기획실 성장기획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미래전략기획실 혁신경제전환과, 포용사회전략과, 상생협력전략과, 재정협력총괄과	12명 (4급 4명, 5급 3명, 6급 1명, 7급 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예산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재정성과국 통합평가과	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7. 국고보조금관리단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8. 국고보조금관리단 국고보조금 총괄담당관	10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2029년 6월 30일까지
9. 국고보조금관리단 국고보조금 점검담당관	12명 (4급 1명, 5급 8명, 6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법·제도의 정비 2.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부처별 · 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마련 3.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부처별 · 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

제9조(재정성과국) ① ~ ⑤ (생략)

⑥ 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 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

5. 국고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6.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2.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 총괄

3.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4. 각 중앙행정기관 부정수급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성 점검

제9조(재정성과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u><삭 제></u>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 운영을 위한 정책 · 법령 · 제도의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u><삭 제></u>
1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u><삭 제></u>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예산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36</u>	<u>460</u>	+24
·	·	·	
·	·	·	
·	·	·	
별정직 계	<u>3</u>	<u>4</u>	+1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장관정책보좌관)	<u>0</u>	<u>1</u>	+1
·	·	·	
·	·	·	
일반직 계	<u>431</u>	<u>454</u>	+23
고위공무원단	<u>16</u>	<u>17</u>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3</u>	<u>16</u>	+3
서기관	<u>30</u>	<u>29</u>	-1
·	·	·	
·	·	·	
·	·	·	
행정사무관	<u>133</u>	<u>142</u>	+9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46</u>	<u>49</u>	+3
행정주사	<u>56</u>	<u>61</u>	+5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 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u>28</u>	<u>30</u>	+2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비서 (6급 상당)	<u>0</u>	<u>1</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기획예산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36</u>	<u>460</u>	+24
•	•	•	
•	•	•	
•	•	•	
별정직 계	<u>3</u>	<u>4</u>	+1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장관청책보좌관)	<u>0</u>	<u>1</u>	+1
•	•	•	
•	•	•	
일반직 계	<u>431</u>	<u>454</u>	+23
고위공무원단	<u>16</u>	<u>17</u>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3</u>	<u>16</u>	+3
서기관	<u>30</u>	<u>29</u>	-1
•	•	•	
•	•	•	
•	•	•	
행정사무관	<u>139</u>	<u>148</u>	+9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u>46</u>	<u>49</u>	+3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행정주사	<u>48</u>	<u>53</u>	+5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 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비서 (6급 상당)	<u>28</u>	<u>30</u>	+2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비서 (6급 상당)	<u>0</u>	<u>1</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